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02
----------	--------

제안일자 : 2016. 04. 2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민편익 증진과 비상시 안전지대 제공 등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 부스 설치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 저해 및 광고물의 부착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부스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설치기간을 제한하여 시장이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2. 수정 주요내용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자동심장제세 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안심부스”를 추가하고(안 제10조 제1항제4호),
- 이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안심부스

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생략)</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 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 스</u></p> <p>5. (현행 4와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 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 는 공중전화안심부스</u></p> <p>5. (현행 4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은 2017 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지 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u></p>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안심부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p> <p>① (생략)</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안심부스</u></p> <p>5. (현행 4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